



# 구의회사무국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(제199회 제1차 정례회)

『지방자치법』 제66조의2와 관련하여 『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강북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
### 1. 조례현황

연번	발의의원	안건명	비고
1	박문수, 구본승 김영준, 이백균 이정식, 장동우 강선경	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
2. 입법예고기간 : 2016. 6. 10.(금) ~ 6. 15.(수)(-6일간-)

3. 입법예고방법 :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

붙임 조례안 및 입법 예고문 각 1부. 끝.

주무관 **이동민** 의사팀장 **노희범** 구의회사무국장 **정명수** 06/10

협조자 전문위원 **조병훈**

시행 구의회사무국-4873 ( ) 접수 ( )

우 0103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89(수유동) / <http://council.gangbuk.go.kr>

전화 02-901-4521 /전송 02-901-4519 / 대시민공개